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-2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되면서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에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로 변경

나. “2018년 5월 30일”을 “2023년 5월 30일”로 개정(제5조의2)하여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8. 3. 2. ~ 2018. 3. 22. (의견제출 없음)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- 4) 재정계획 심사 결과 : 적정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(2018.03.29.)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 1부
- 7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- 8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
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
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”로, “2018년 5월 30일”을  
“2023년 5월 30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5월 30일까지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----- 2023년 5월 30일-----</p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
설치·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영을 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이승익
연 락 처	02-3153-8805